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반대 의견서에 대한 **답변****

2015. 11

KBIZ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 **제품명 : 전화 · 교환기 · 네트워크연결장치**

□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 동보장치(4322269601)**

통합배선반(4322281805)

☞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장 : 해당제품의 산업 현황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구내방송장치, 동보장치, 통합배선반 시공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는 8,656개사임
- 반면, 직접생산업체로 등록한 업체는 구내방송장치(490개사), 동보장치(35개사), 통합배선반(27개사)로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극히 일부 업체만이 물품발주 입찰을 독점

☞ 조합 답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지난 10월 1일(붙임 공문서 참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공사협회 / 참석자 : 공대진 국장) 그리고 본 조합과 정보통신공사업을 겸하는 제조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공사협회가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사협회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대한 법과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과정에서 나온 결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장을 또다시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일반적 상식을 벗어나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공사협회 주장의 내용이 중소 공사업체들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지만 실제 대기업 군에 속하는 대형SI업체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확인 업체의 성격은 정보통신 공사면허를 소지하고 제조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을 겸하여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 공사업 면허와 SI면허만을 소지하고 있는 일반 공사업체, SI업체와는 사업영역 자체가 다르고 또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 제조업체를 육성하고 더불어 정보통신 공사업과도 상생을 도모케 하여 양 사업영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는 제도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동보장치’와 ‘통합배선반’은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 도입 때부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보장치’는 공공기관 내부와 외부에 시스템으로(S/W, H/W 구성)으로 설치되어 행정안내방송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피 등을 알려주는 시스템 제품이고, ‘통합배선반’은 건물의 인입되는 모든 통신을 제어하고 네트워크 하는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문적 제품입니다. 이러한 전문적 제조 물품과 일반 공사업체와 어떻게 연관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미래부와 협회가 주장하는 해당제품의 산업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협회 회원 8천여업체의 실태는 약 38%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업계에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업체들이 보통 3~4개 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도·농이 합쳐져 있는 지자체에서는 농공단지에 사무실만 설치하고 입찰만 전문으로 하여 낙찰이 되면 업체가 아닌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지금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현 주소이고 자사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업체는 현실적으로 전체업체의 40%미만이라고 업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고 자격소지자 면허증을 대여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면허를 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에서 공사업을 관리하다보니 허술하기 짝이 없고 1년에 단 하루의 실태조사 때에만 자격소지자의 얼굴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정작 업계의 실태가 이렇다 보니 업체가 증가해도 실질적 일자리는 창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업무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현실을 관련 협회에서도 당연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조와 공사업의 영역이 분명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하여 업체의

숫자 비율만 대비한 주장은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향후 역할은 자체 회원사들 중 우수한 기술 인력과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공공구매제도에 의한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해당 업체들이 동 제도에 진입하여 정보통신기술에 참여하고 양 업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에 중소기업 경영이 개선되고 매출증대로 이어 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장 : 지정 제외 요청 사유

○ 불합리한 수급자격 제한으로 정당한 공사업체의 입찰참여 기회 차단

- 현재 정보통신분야로 지정된 중기간 경쟁제품의 경우 대부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하며,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자라면 누구나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수급자격을 제한받아서 아니 되나,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로 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등록한 대다수의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의 입찰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 특정 극소수의 업체만이 시장을 독점하는 행태 발생

<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등록업체 수 >

구내방송장치	동보장치	통합배선반
490개(5.7%)	35개(0.4%)	27개(0.3%)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수 : 8,656개사

☞ **조합 답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호~4호에서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4호, 시행령 "별표 1"

통신설비 공사	통신선로 설비공사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u>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이블·전주·지지철물·케이블방재·철탑·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u> 등의 공사
	구내통신 설비공사	<u>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전화설비, 방범설비, 방송설비, 방재설비중 정보통신설비, 수직·수평배관 및 배선설비, 주장비실설비, 층장비실설비, 장애자용음향통신설비, 키폰전화설비</u> 등의 공사

-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정보통신공사업업을 영위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제1호에 의한 기계장치 및 기구·선로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리함에도 공사협회는 제품 등을 단순 설치 공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공사업을 겸하고 있는 직접생산확인 업체를 일반 정보통신공사업체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직접생산확인 업체 수를 정보통신공사업체 수와 대비하여 직접생산확인 업체 수를 퍼센트(%)로 표기하고 있는 주장은 제조업과 공사업의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각종 하드웨어(PCB, CPU 등)와 소프트웨어(운영프로그램, 연결프로그램, 설계프로그램 등)등의 부분품들을 조립·연동·설치·시험 등의 생산공정을 통해 하나의 시스템(완제품)이 생산되는 High Technology의 중소기업의 유형(有形) 제품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2항」에서 정의한 공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서 정의한 정보통신공사는 단순 공사(노무비)로 대부분 한정되며, 해당 정보통신공사 시 공사 관련 자재는 대부분 발주처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관급자재)로 별도 구매하여 제공하고 있음.

‘동보장치’, ‘통합배선반’ 제품 등은 각 시스템의 납품설치·시험 등의 공정이 필수적인 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발주처에서 설치·시험에 대한 설치비(노무비)를 일부 포함하여 발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치비는 해당물품의 필수적인 제조 및 납품·설치를 위한 비용임에도 이를 ‘정보통신공사’로 해석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비취 봐도 맞지 않는 주장임.

이에 관하여 본 조항은 이러한 분쟁을 해소코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확인 신청 시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정보통신공사의 설치에 대한 자격을 보완토록 하기 위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기본으로 정하고 있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참조)

전화·교환기·네트워크 연결 장치

□ 직접생산 정의

동보장치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PCB회로, CPU 및 구동 IC 기타 부분 전기 전자 부품을 구입하여 자체 제작된 시스템 보드 또는 가입자 보드(통신보드)와 함께 케이스, 전원부 등 기기조립 및 운영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제품 검사 등(외주불가) 각 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자동안내장치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음성카드 및 부품 카드, 서버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음성카드 및 부품 카드 삽입, 프로그램 설치, 케이스, 기기조립 및 연결 프로그램 환경 설정(외주불가), 작동검사(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배선반(구내단자함, 국선단자함, 본배선반, 중간배선반, 통합배선반)의 직접생산은 보유 설계프로그램(CAD프로그램 등)을 이용 직접설계(외주불가)하고 원재료인 황동, SUS와 부품품 각종 Terminal, 광아답터등을 타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제작 생산한 배선반 부품품(랙, 캐비닛, 단자함, 단자기자재, 네트워크자재, 광자재(각종 코드류) 등)을 함께 가공(외주가능),조립(외주불가), 검사(외주불가),시험(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제조/통신기기 또는 유선통신기기제조)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6410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버니어캘리퍼스 ② 마이크로미터 ③ 인두기 ④ 래핑기 ⑤ 전동드릴 ⑥ 전원공급장치(AC/DC) ⑦ CAD프로그램(배선반에 한함) <검사설비> ① 내전압시험기 ② 절연저항계 ③ 디지털멀티메타(전압전류계, 동보장치에 한함) ④ 케이블측정기(배선반에 한함)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공인교정성적서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 공정	전체 공정	<동보장치> 자재입고→PCB 조립→IC프로그램 입력→케이스배선및기기조립→운영프로그램 설치→단위Test→종합Test→완제품 포장 <자동안내장치> 자재입고→단위자재 Test→제품 조립→시스템 조립→프로그램 설치→통합 테스트→완제품 포장 <배선반> 설계→원재료구입 및 가공→부분품구입 및 반제품생산→공정검사 및 완제품 조립(Data,Voice 및 Local 단자반, 광 단자반, 접지단자반, 서지프로텍트 장착)→제품 성능검사→완제품 포장	- 완성품 메뉴얼
	필수 공정	<동보장치> 케이스배선 및 기기조립(음성/팩스보드 조합 장착, 시스템 보드, 가입자보드, 전원부)→운영프로그램 설치→종합Test (교환기 및 네트워크 회선 연결, 기능시험) <자동안내장치> 시스템 조립(서버/음성보드 조립 및 장착, 교환기 회선 연결)→프로그램설치(시나리오 적용 프로그램 설치 및 단위 테스트) <배선반> 설계→반제품생산→공정검사 및 완제품 조립(Data, Voice 및 Local 단자반, 접지단자반, 서지프로텍트 장착)→제품검사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기 타		① 최근 2년 이내 제품생산에 소요된 원.부자재 매입 증빙서 첨부(생산완제품이 비치되고 시험운용이 가능해야 함)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③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첨부)	- 매입세금계산서 - 한국전력공사 확인 - 등록증 및 자격자 확인

※ 제조(製造)의 정의

제조란 원료와 재료를 이용 거기에 기술을 더하여, 새로운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만들거나, 원부자재를 이용하여 하나의 system을 구현하는 것을 말함. 즉, 조립, 가공을 통하여 제품이나 system을 만드는 것을 의미함.

※ 제품(製品)의 정의

제품(製品)은 제조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재화를 말한다. 공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주요한 상품이 된다. 제조 공정은 있지만 형태가 없는 제품도 있다. 디지털 형식으로 인터넷 등 네트워크로 전달될 수 있는 음반, 비디오, 소프트웨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기업회계에서의 제품의 의미는, 제조 공정을 거친 재화만을 한정하여 의미하므로, 상품과 대조되는 개념이 된다. 기업회계에서의 상품은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은 재화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직접 제조하여 시계를 판매한다면 그것은 제품이지만, 납품업자에게서 시계를 사와서 그것을 판매한다면 그것은 상품이 된다.

※ 직접생산 제조업(製造業)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업종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다. 예) **업태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이에 제조업을 영위하고 싶은 사업자는 산업분류표에서 해당 제조업 코드를 선정하여(유선통신장치 제조업:26410) 관할 지자체장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내지 제8항·제1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4제1항의 규정」 의거 제조설비를 갖춘 후 공장 설립(등록)을 신청한다.

다만, 공사업 또는 건설업의 경우는 공장등록 및 제조시설이 필요 없다. 따라서 공장을 설립하고 해당물품을 제조하려는 사업자(직접생산 품목 제조업체)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에 부합한 시설 및 기술과 인력을 갖추고 직접생산 확인을 받는다. 이에 직접생산 확인 업체는 사업자등록증(통계청:제조 업종등록), 지자체(제조 공장등록), 직접생산증명확인(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받고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모두 무시한다는 것은 지금껏 발전시켜온 제조업 위상과 정부의 선진 조달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라 판단된다. ■

☞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장 :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보호와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
- 그러나,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정보통신설비의 경우 발주규모가 고시금액(2.1억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동 설비를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다시 지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동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간 이중 규제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음

※ '14년 주요 정보통신설비 발주현황('14.1.1.~ 12.31)

품명	세부품명	전체	2.1억원 미만	2.1억원 이상
구내방송장치	구내방송장치	684건	665건(97.2%)	19건(2.8%)
배선반	구내단자함	1건	1건(100%)	0건(-)
	국선단자함	3건	3건(100%)	0건(-)
	본배선반	0건	0건(-)	0건(-)
	중간배선반	0건	0건(-)	0건(-)
	통합배선반	102건	87건(85.3%)	15건(14.7%)
동보장치	동보장치	225건	209건(92.9%)	16건(7.1%)

☞ **조합 답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2.1억 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경쟁 입찰 물품이다.

-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해 중소기업자와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여 경영을 촉진시키고자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새로운 제도를 법제화 했던 것으로 이는 직접생산 확인서가 없는 중소기업도 참여가 가능한 것이다. **법의 제도가 이러한 내용임에도 공사협회는 법률과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이 환 욱	02-2110-1917

KBIZ 중소기업중앙회

수신자 (경유)	수신자 참조

제 목 201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추천 관련 회의 참석 요청

2016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추천과 관련하여 주요 이견 제품의 신청 사유 등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10.1(목) 10:00~17:20(상세 일정 붙임 참조)
2.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5층 판로지원실 회의실
3. 참석대상 : 해당제품 신청 법인 담당자 등 2명 이내
4. 준비사항 : 해당제품 설명자료(시장현황 등 신청서 같음 가능), 지정
필요성, 반대의견 반박자료

붙임 : 회의 상세 일정 1부. 끝.

중소기업중앙회장

수신자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한국고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과학기술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전동기구LED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사)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사)정부소달컴퓨터협회장, 한국체육시설공원협회장, 한국컴퓨팅산업협회장

직원 최가람 실장 양갑수

협조자

시행 판로지원실-2144 (2015.09.30.) 접수
우 15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5층 판로지원실 /
전화 02-2124-3246 전송 02-783-4909 / mureoniff@kbiz.or.kr / 공개